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776
----------	-------

발의연월일 : 2025. 12. 31.

발 의 자 : 김승수 · 김은혜 · 서천호
한지아 · 박충권 · 김도읍
안상훈 · 엄태영 · 김정재
정점식 · 서범수 · 강명구
구자근 · 안철수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등급분류책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체등급분류에 관한 업무는 등급분류책임자가 아닌 전담인력이나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수행하여야 하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이러한 인력을 지정해야 할 의무가 없어 등급분류 업무를 전문성 있게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자체 등급분류를 위해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을 두고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책임자뿐만 아니라 전담인력도 교육하도록 함으로써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전문성을 갖추고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

려는 것임(안 제50조의3제2항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담인력(업무위탁 계약을 맺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전담인력”이라 한다)을 둘 것
4. 등급분류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2인 이상의 전문가(소속 직원이 아닌 전문가를 말한다)를 위촉할 것

제50조의4제3호 중 “등급분류책임자는”을 “등급분류책임자와 전담인력은”으로 한다.

제50조의8제1항제4호 중 “등급분류책임자에”를 “등급분류책임자와 전담인력에”로 한다.

제72조제5호의2 중 “등급분류책임자”를 “등급분류책임자와 전담인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① (생 략)	제50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담인력(업무위탁 계약을 맺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전담인력”이라 한다)을 둘 것</u>
<u><신 설></u>	<u>4. 등급분류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2인 이상의 전문가(소속 직원이 아닌 전문가를 말한다)를 위촉할 것</u>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 ----- -----.

1. · 2. (생 략)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u>등급분류책임자</u>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 4. · 5. (생 략) 제50조의8(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제50조의4제3호에 따른 <u>등급분류책임자</u>에 대한 온라인 교육시스템과 대면 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 5. ~ 7. (생 략) ② ~ ④ (생 략) 제72조(직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5. (생 략) 5의2. <u>등급분류책임자</u> 및 온라인비디오물 이용자 교육에 관	1. · 2. (현행과 같음) 3. ----- ----- -----<u>등급분류책임자와 전담인력</u>은----- ----- ----- 4. · 5. (현행과 같음) 제50조의8(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①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등급분류책임자 및 전담인력</u>에----- ----- -----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2조(직무) -----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u>등급분류책임자와 전담인력</u>-----
---	--

한 사항 5의3. · 6. (생 략)	----- 5의3. · 6. (현행과 같음)
-------------------------	-----------------------------